





## I. 서론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무형문화유산<sup>1</sup>을 보호·전승·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 즉 무형문화유산 체계는 1962년 1월 10일에 ‘문화재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그 기초가 구축되었으며 1952년 6월 26일에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1964년 2월 15일에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이 공포되면서 제도적 틀이 갖춰지게 되었다. 이후 1970년대에 ‘기·예능보유자인정제도’, ‘시·도무형문화재제도’와 1980년대에 ‘전수교육제도’ 등이 도입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체계가 형성되었다. 정부의 주도로 운영되었던 무형문화유산 체계는 근대시대 도시화 및 공업화의 파고 속에 소멸될 위협에 처했던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했지만 최근 전승 상황에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12년의 조사에 따르면 중요무형문화재의 27.6%가 보유자나 전수교육조교가 없어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시·도무형문화재의 경우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충청도 시·도무형문화재의 약 60%가 전승 단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sup>2</sup> 이는 비인기 종목의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들이 정부의 지원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전승활동을 포기하거나 새로운 후계자가 나타나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무형문화유산의 자생력을 높이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2012년에 ‘중요무형문화재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문제의 해

결에 힘쓰고 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4,459억 원을 투입하여 ‘무형문화재 공연 활성화’, ‘전통공예 진흥기반 조성’, ‘전수교육관 활성화’, ‘전승자 보전·전승 지원 확대’, ‘법적기반·실행기구 마련’ 등 5가지 핵심 전략을 바탕으로 22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sup>3</sup>

이와 같은 정책의 실행으로 인해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상황이 종전보다 개선될 것이라 기대도 되지만 한편으로 자생력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 사전적 의미로 자생력이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며, 오늘날 사회경제의 기본 체제인 자본주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이 자생력을 갖는다는 의미는 ‘시장과 사회의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꾸준히 활동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의 정책은 이러한 관점에 의해 계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의 정책은 전통공예품 인증제 도입, 전수교육관 활성화, 전승자 지원금 상향지급 등 정부의 지원 강화를 통한 전승자의 여건 개선 등과 같은 과제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조화, 시민과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자생력 강화 측면에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생력 측면에서 기존의 정책 및 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제도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무형문화유산의 자생력 및 전승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과 관련한 선행연구에는 「무형문화재 공연상

1 ‘무형문화재’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 들어 ‘무형문화유산’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2003년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 협약이 채택되었고 2011년에 중국이 조선족 아리랑을 자국의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내에서도 기존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기 때문이다(오정심 2015: 14). 또한 사전적 의미로 문화유산이 문화재를 비롯한 기타 문화양식들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용어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2012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 보유자나 전수조교가 없는 종목이 전체 116개 중 3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자 부재 종목으로는 거문고산조, 제주민요, 곡성의돌살나이, 명주 짜기, 바디장, 소반장 등 6개 종목이며, 전수교육조교 부재 종목은 대근정약, 발탈, 줄타기, 석전대제, 사직대제, 갯길, 낙죽장, 두석장 등 26개 종목이다(세계일보 2012년 9월 25일). 충북지역의 무형문화재 27개 종목 중 전수교육조교가 없는 종목은 6개 종목(59%)이며, 충남은 56개 종목 중 28개 종목(50%)이 전수교육조교가 없어 전승 단절 위기에 놓여있다(충청일보 2014년 7월 16일).

3 문화재청, 2012, 「중요무형문화재 활성화 종합계획」, p.6.

품 소비자의 욕구 및 동기와 만족 간의 관계 분석(이정호 2009)』를 비롯한 3건의 연구가 있다.<sup>4</sup> 이 연구들은 주로 관광 상품의 개발, 전통공연 관람객 개발, 전달방식의 변화, 디지털콘텐츠 개발 등의 방법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의 활성화 방안을 고찰하였다. 이정호의 연구(2009)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을 공급과 수요의 관계로 파악하고 그동안의 연구 및 정책이 공급 측면에 편중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이 침체하게 됐다고 지적하여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무형문화유산을 상품 개념으로 접근하여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 다양성 등을 간과하였고 일반 시민을 콘텐츠의 소비자로 국한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한계점을 보완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국제 표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기본내용에 기초하여 무형문화유산에 접근하고자 한다. 유네스코 협약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을 문화적 공동체 구성원들이 구전, 노래, 지식, 행위 등을 통해 지키고 표현하며 다음 세대로 전승하는 '살아있는 유산'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그 범주로 '무형'의 관습, 지식, 기능 등을 포함하여 '유형'의 도구, 물품 등 그리고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지역민'을 무형문화유산의 활용과 전승, 발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2. 연구 방법 및 범위

무형문화유산의 자생력 강화 및 전승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실마리는 전통문화도시로 유명한 일본 가나자와의 정책 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데, 특히 본 연구와 관련하여 가나자와 마치하쿠 사례를 주목할 만하다. 가나

자와 마치하쿠(Kanazawa Machihaku)는 지역민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도시와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2000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박람회이다. 가나자와는 박람회를 통해 지역민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전통문화유산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박람회의 한 관계자는 전통문화 활성화와 지역민 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전통 차를 즐기고 차잔을 구입하는 시민이 늘어나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생산자가 증대될 것이며 생산자는 다시 품질을 개선하여 재생산하는 등의 선순환의 발전의 흐름이 일어나 궁극적으로 일상 속에서 전통문화가 활발히 전승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sup>5</sup> 즉 가나자와는 문화유산을 국가의 영역에 한정하여 보호·전승하는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사회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상호관계와 생산·소비·소멸이라는 선순환 관점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지역민의 양성을 통해 수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전통문화유산 전승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나자와의 전략은 최근에 공연예술, 콘텐츠산업 등 분야에서 자생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꾀하기 위해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생태계적 방식'과 유사하다. 생태계적 방식은 먹이사슬, 선순환 등 생태계의 특징 및 원리를 시스템의 운영에 적용하여 외부의 개입을 동원하지 않고서도 내부의 자생력만으로 시스템을 유지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적 방식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의 자생력 강화 및 전승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생태계적 방식과 관련한 선행연구에는 「공연예술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뮤지컬 산업을 중심으로(권혁인 외 2015)」를 비롯한 여러 편의 논문

4 무형문화유산 관련 국내 연구에는 최초의 학술논문이 검색되는 1969년부터 현재까지 1,000건 이상의 논문이 있다. 이 중에서 '자생력', '수요자(소비자, 향유자, 관람객, 지역민, 시민)' 등의 주요 키워드로 재검색하여 본 연구와 관련 있는 선행연구를 조사한 결과 「무형문화재 공연상품 소비자의 욕구 및 동기와 만족 간의 관계 분석(이정호 2009)」, 「무형문화재의 관광상품화에 관한 연구(강보영 2002)」, 「판소리에 대한 엇갈린 인식과 대중화의 항쟁(이태화 2013)」,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보전과 활용(김광희 2014)」가 집약됐다.

5 위의 책, pp.11~12.



이 있는데<sup>6</sup>, 이 연구들은 주로 생태계의 먹이사슬 구조를 활용하여 자생적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태계적 세계관과 생태계의 다양한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이를 연구방법론으로써 활용하고자 한다. 이는 첫째, 무형문화유산 체계에서 무형문화유산이 사람 및 사회 환경과 분리되어 기·예능을 객관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다고 전제되어 제도적 시스템이 운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무형문화유산의 비경제적 특성<sup>7</sup>으로 인해 가치사슬 및 선순환 구조의 형성만으로 자생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목적 하에 다음 제2장에서는 생태계적 방식 이론을 고찰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무형문화유산 체계를 검토하고 제3장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자생력 강화 및 전승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II. 무형문화유산 체계에 대한 생태계적 고찰

### 1. 생태계적 방식에 대한 이해

‘생태계적 세계관’에서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독립적인 존재가 아닌 전체적인 관계에서 하나의 생명의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어느 한 부분의 손실 또는 파괴만으로 심각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호 간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한다. <표 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생태계적 세계관’에서는 경쟁과 지배를 통

한 양적 확장보다는 질적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추구한다. 그리고 지상의 모든 것들을 서로 분리된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되어 있는 전체로 인식하는 경향을 띤다.<sup>8</sup>

무형문화유산 체계에서 무형문화유산이 사람 및 사회 환경과 분리된 채 기·예능을 객관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다고 전제되어 관련 제도가 운영<sup>9</sup> 될 수 있었던 배경에 무형문화유산 체계가 성립되던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이른바 ‘기계론적 세계관’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 ‘기계론적 세계관’은 근대시대에 갈릴레이, 베이컨, 데카르트, 뉴턴의 과학적 발견과 생물학의 발달과 함께 확산되었는데, 이 세계관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기계의 부품처럼 분해하여 체계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연환경 파괴 등 기계론적 세계관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들이 인류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문제해결의 대안으로써 ‘생태계적 세계관’이 등장하게 된 것이었다.

생태계는 사전적 의미로 ‘하나의 생태적 단위로 상호 작용하는 생물체와 그 물리적 환경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을 뜻한다. 생태계는 다양한 특징과 원리로 유지되는데, 그 중에서 적자생존과 약육강식, 먹이사슬의 원리는 오늘날 사회의 기본 체제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연결되어 사회 및 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자주 활용되었다. 그동안 기업과 개인은 적자생존, 약육강식 등과 같은 생존법칙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기적인 생존경쟁을 펼쳐왔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6 ‘생태계적 방식’ 관련 연구에는 「문화예술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 가치 네트워크 모델 구성과 특성 비교(권혁인·이진화 2014)」,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혁신플랫폼의 활용전략(권보람·김주성 2014)」, 「기업생태계와 플랫폼 전략(삼성경제연구소 2012)」 등이 있다.

7 전통공연, 전통공예 등 무형문화유산은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어렵고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해 높은 인건비의 부담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적자가 발생할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11~12).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무형문화유산은 국가의 공공재원으로 보호·전승되어 왔지만 최근에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인한 전승자의 생계문제, 전승 단절 위기 현상이 방증하듯이 다른 방식이 모색되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8 위의 책, pp.27~28.

9 무형문화유산은 본래 생산자의 지식과 행위 속에서 생산되던 예술이었지만 1962년에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후에 생산자와 기능 및 예능이 분리되어 국가차원에서 보존, 관리되는 것으로 그 개념과 관계가 재편되었다(정수진 2004: 279).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경우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 및 예능의 보유자(보유단체)도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무형문화유산 체계에서 기·예능과 사람을 분리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생태계적 세계관'과 '기계론적 세계관' 비교<sup>10</sup>

구분	생태계적	기계론적
우주관	지상의 모든 것들은 전체적인 관계로 얽혀있는 것	지상의 모든 것들은 독립적 존재하는 입자, 우주는 이러한 입자들이 조합된 기계
사고방식	통합적, 직관적, 전체론적 <sup>11</sup> , 비선형적	분석적, 합리적, 환원주의적, 선형적
중요가치	질적 발전, 상호협력 등	양적 확장, 경쟁, 지배, 통제 등
윤리의식	모든 생물의 고유가치 인정하고 생명을 존중	인간 중심의 개발, 발전을 위한 자연파괴 가능

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발전의 논리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생 측면에서의 생태계 원리가 새로운 발전논리로 부각되고 있다. 생태계는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먹이사슬뿐만 아니라 공생을 위한 유기체적 원리에 의해서도 운영된다. 물리학자 프리츨프 카프라는 그의 저서, 『생명의 그물』에서 생태계적 세계관을 제시하면서 생태계의 여러 가지 특징 및 원리를 소개했는데 '공생을 위한 유기체적 원리'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계를 구성하는 개체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마치 생명의 그물망으로 연결된 것처럼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 손실이 있으면 전체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태계 개체들은 상생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활동을 한다.

둘째, 생태계 개체들은 다양성을 추구한다. 이 다양성 때문에 외부환경의 단절적인 변화에 대해 생태계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

셋째, 생태계는 개방적, 순환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외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에너지가 유입되며 이것은 먹이사슬을 통해 순환한다.

넷째, 생태계는 자기조직화 원리로 시스템을 안정과 균형 상태로 유지한다. 자기조직화라는 것은 생태계의 안정

과 균형을 위협하거나 파괴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다시 안정 상태로 회복시키는 자율적인 메커니즘을 말한다.

다섯째, 생태계는 공진화 원리로 발전한다. 공진화는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생태계 개체들이 경쟁을 통해서로 진화·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적자생존의 생존경쟁과는 다른 측면에서의 발전 원리를 말한다.<sup>12</sup>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면 생태계는 '전체론적 관계'의 그물망으로 얽혀 있는 개체들이 '공생'을 위해 '상호협력'을 추구하며 경쟁을 통해 서로가 '진화발전'을 촉진하는 등의 원리로 유지·발전한다. <표 2>는 무형문화유산 체계의 분석을 위해 주요 내용을 키워드로 요약하여 정리한 것인데, 반대 개념을 통해 그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무형문화유산은 비경제적 특성으로 인해 약육강식, 적자생존 등의 법칙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의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무형문화유산은 정부 주도 하에 공공재원으로 보호·전승되었다. 하지만 최근의 전승 단절 위기현상이 방증하듯이 정부의 재원에는 한계가 있으며 위기적 현상이 확산되면서 다른 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생태계의 '공생을 위한 유기체적 원리'는 무형문화유산

10 프리츨프 카프라, 1988, 『생명의 그물 : 생물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이해』, pp.25~30.  
 11 전체론은 세계를 서로 분리된 집합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전체로 보는 경향을 말하며, 환원주의는 다양한 현상을 기본적인 하나의 원리나 요인으로 설명하는 경향을 말한다(철학사전).  
 12 이상에서 살핀 이론 내용은 프리츨프 카프라(1998)의 이론을 중심으로 오철호·김기형(2010), 유명만(2006), 유재미·오철호(2011), 오정심(2015)의 연구 성과를 보완하여 정리하였다.





표 2. 생태계의 '공생'을 위한 유기체적 특징과 원리'

구분	특징 및 원리	반대 개념
목표	• 공생, 균형적 발전, 질적 발전	• 양적 확장, 통제, 생존위반 이기적 경쟁
특징	• 전체론적 관계로 연결 • 개방적 구조, 순환 구조, 지속적 에너지 유입, 다양성 추구, 상호 협력	• 분류, 분석적 • 위계적, 지배적, 폐쇄적, 일방적, 획일화
운영원리	• 경쟁을 통한 서로 진화발전 촉진 • 균형과 안정의 유지를 위한 자율적·선순환적 발전 활동	• 생존을 위한 이기적 경쟁 • 불균형, 선형적 흐름

표 3. 문화재보호법<sup>13</sup>에 대한 생태계적 검토

규정 내용		생태계적 검토
목적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제1조).	• 무형문화유산의 고유 특성보다는 민족문화의 원형으로 상정
정의 및 범주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제2조 2).	• 무형문화유산을 분류, 체계화 • 질적 발전을 위해 상호관계성 제거 필요
주요 원칙	(원형보존주의)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제3조). <sup>14</sup>	• 사회문화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및 변화·발전 특성 간과
	(중점보존주의)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제24조).	• 중요도에 의해 선별·관리, 차별적 질서 성립 • 다양성 증진을 위한 원칙 보완 필요
	(국가주도방식)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국민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제4조 4, 제41조).	• 국가 대부분 역할, 국민 소극적 역할 • 수요 활성화 위해 국민에 대한 인식 및 역할 확대 필요

의 자생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 입각해 무형문화유산 체계를 검토하고 나아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무형문화유산 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무형문화유산을 보호·전승·활용하기 위해 구성된 제도 즉 '무형문화유산 체계'는 크게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기본원칙', '활동주체' 그리고 '절차 및 방법' 등으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다. 각각의 내용을 '전체론적', '공생', '균형', '다양성', '상호협력', '진화발전', '개방성', '선순환 구조' 등을 주요 키워드로 하는 생태계적 방식을 통해 검토해 보자. 검토방식은 문화재보호법을 중심으로 무형문화유산 관련 규정 내용을 검토하여 표로 요약하고 이를 생태계 이론을 통해 분석할 것이다.

###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기본 원칙

무형문화유산 체계의 기본 원칙은 '문화재보호법'의 규정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중요무형문화재 이수 심사에 관한 규정',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등에 규정되어 있다. <표 3>은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무형문화유산 체계의 기본원칙을 요약하고 그 내용을 생태계적 방식을 통해 검토한 것이다.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무형문화유산 체계의 기본 원칙을 생태계적 방식을 통해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지적된다. 첫째, 무형문화유산을 정의함에 있어 전체론적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장르 및 주제, 중요도, 역할 등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 체계화하고 있다. 그리고 형태를 기준

13 시행 2015.1.29. 법률 제12352호, 2014.1.28. 일부개정.

14 원형은 '전승 상황에서 변조되지 않고 이어져 내려오는 것', '개인의 창작력에 의해 가식과 기교가 가해지지 않는 것', '오랜 세월의 변화가 별로 없어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말한다(배영동 1996: 191).

으로 유형과 무형을 나누고 무형에 한정하여 무형문화유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형문화유산의 대부분이 유형의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이거나 소품, 도구, 의상 등을 사용하여 주어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임을 생각해 보면 무형문화유산은 유형물과 공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sup>15</sup> 현재의 체계에서는 이러한 점이 간과되었다.

둘째, 현재의 체계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이 과거 전통사회에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사회문화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자생적으로 변화·발전되었다는 특성이 간과되어 있고, 원형보존주의 원칙으로 인해 무형문화유산이 유형문화재처럼 객관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실체로 여겨지게 되었다.<sup>16</sup> 이 때문에 시대 및 사회의 변화에 따른 무형문화유산의 발전이 제한되었다.

셋째, 현재의 체계에서는 중요도에 의해 무형문화유산을 선별하여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관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문화유산들 가운데 지정문화재와 아닌 것이라는 차별적인 질서가 성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정문화재가 아닌 것은 상대적으로 소멸될 위험에 처하게 되어 다양성의 증진 측면에서 문제가 지적된다.

넷째, 현재의 무형문화유산 체계에서 국가는 모든 사항에 개입·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국민과 전승자는 정

부시책에 협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과 전승자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문제 해결과 발전이 어렵게 되었고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체계가 제대로 유지될 수 없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2) 무형문화유산 체계의 활동주체 및 방법

무형문화유산 체계는 ‘국가’, ‘보유자 및 전승자’, ‘국민’의 참여와 활동으로 운영된다. <표 4>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각의 역할을 정리한 것인데, 표의 내용을 통해 활동주체의 위상과 역할이 과거 전통사회 때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보유자 또는 전승자라 불리는 사람들은 과거 전통사회에서 예술가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지식과 행위 속에서 무형문화유산을 창작·표현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이들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무형문화유산을 향유하였다.<sup>17</sup> 하지만 전통사회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생산·향유·전승활동에 주체적인 역할을 하던 예술가와 일반 백성들은 오늘날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정부시책에 참여하는 전승자와 일반 대중으로 변화되었다.

한편, 무형문화유산 체계는 문화재보호법과 각종 관련 규정이 정해 놓은 절차와 방법에 의해 운영된다. 국가

표 4. 무형문화유산 체계의 활동주체에 대한 생태계적 검토

활동주체 및 역할		생태계적 검토
정부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형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시책 수립·추진</li> <li>• 중요무형문화재 및 보유자 지정·관리·해제 등</li> <li>• 보유자로 하여금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실시·관리 등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41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및 정부기관 대부분 역할 담당</li> <li>• 전승자 및 국민은 협조자 역할</li> <li>• 자생적 발전 위해 활동주체 범위 및 인식 확대 필요</li> </ul>
보유자 및 전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한 전수교육, 전승활동</li> <li>• 전승활동 등 관련 사항 정부기관에 보고(문화재보호법 제41조,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li> </ul>	
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시책에 적극적 협조(문화재보호법 제4조)</li> </ul>	

15 송준, 2008, 「無形文化遺産의 保存과 活用에 대한 小考 : 전형典型의 개념을 중심으로」, 『남도민속연구』 제17호, 남도민속학회, p.221.

16 현재의 체계에서는 유형문화재와 함께 문화재라는 용어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적 의미로 문화재는 소유권을 따질 수 있는 가시적 사물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고 문화유산은 해오던 일이나 정신 따위를 이어주는 것에 사용되는 용어이다. 따라서 원형유지 원칙의 폐지와 함께 가시적 사물에 주로 쓰이는 문화재라는 용어보다는 문화유산 용어의 사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7 정수진, 2004, 「한국 무형문화재 제도의 성립 : 그 사회적 조건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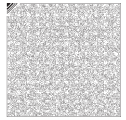


표 5.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의 인정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생태계적 검토

보유자(단체) 인정 절차와 방법 <sup>18</sup>		생태계적 검토
1.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보유자(보유단체) 신청 : 문화재청장 직권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및 권위자 일방적 결정 방식</li> <li>• 질적 발전 위해 소통과 협력 방법 보완 필요</li> </ul>
	보유자 인정 필요성 검토 : 해당분야 문화재위원, 전문위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2인 이상의 검토	
	문화재위원회 검토(소위원회 운영) : 보유자 인정 타당성 검토	
2. 조사	현지조사 및 보유자 인정 조사 : 조사위원 위촉 → 현지조사 → 조사보고서 작성 문화재위원회 검토 :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보고, 보유자 인정 검토	
3. 심의	보유자 인정 예고 및 의견수렴 : 관보공고(30일간)	
	문화재위원회 심의 : 보유자 인정 심의	
4. 인정서 교부	관보, 보유자 인정서 교부 : 당사자 통지 및 인정서 수여, 전승지원금 지급	

표 6.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 이수자 · 장학생의 인정절차 및 방법에 대한 생태계적 검토

전수교육조교 · 이수자 · 장학생 인정 기준 및 방법 <sup>19</sup>		생태계적 검토
전수교육 조교	보유자(단체)가 '이수자' 중에서 2배수 추천 → 문화재위원 및 관계 전문가 2인 이상 심사 → 문화재청장 전수교육조교 증서 교부 (보유자에게 추천권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계적 질서의 전승체계, 최고 위치가 되기 위한 경쟁 및 갈등 가능성 상존, 폐쇄적 방법으로 전승활동 전개</li> <li>• 지속가능한 발전 및 건강한 전승환경 조성 위해 개방적 · 순환적 체계 구축 필요</li> </ul>
이수자	보유자(단체) 및 관련 전문가 3인 이상 심사 → 문화재청장 이수증 교부 (보유자가 심사 참여)	
전수 장학생	6개월 이상 전수교육 받은 자들 중에서 보유자(단체) 추천 → 문화재청장 선정 (보유자에게 추천권 있음)	

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전승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형식적인 책임을 지고 실질적인 역할과 책임을 보유자 및 전승자에게 일임하고 있다. 보유자 및 전승자가 무형문화유산의 원형 보전을 위한 대부분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국가가 정한 엄격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통제받는다. 아래 <표 5>과 <표 6>은 보유자 및 전승자의 인정 절차와 방법을 정리하고 생태계적 방식을 통해 검토한 것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형문화유산 체계는 각 분야의 전문가와 권위자가 심사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소통과 협력에 의한 질적 발전이 제한되었다.

둘째, 전승활동은 최고 위치의 보유자를 중심으로 하여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전수장학생으로 이어지는 위계적 질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전승자들 가운데 최고 위치가 되기 위한 경쟁과 갈등의 가능성이 상존하게 되었다.

셋째, 현재 무형문화유산 체계에서 전승활동은 원형을 잇기 위한 계보 중심의 폐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다양한 사람들이 전승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고 이 때문에 소수의 보유자 및 전승자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전승위기로 이어지는 취약한 구조가 형성되었다.

지금까지 생태계적 방식을 통해 무형문화유산 체계를 검토한 결과 현재의 체계에서 무형문화유산은 국가의 영역에서 보존·전승해야 할 대상으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있고 제도적 시스템은 기능 및 예능의 원형 보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국민은 정부시책에 협조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을 형태, 주제 및 장르,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여러 부분으로 나누고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방법으로 전승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요컨대, 생태계적 관점에서 현재의 무형문화유산

18 국민권익위원회, 2010, 「무형문화재 심사 및 관리제도 개선」, p.4.

19 앞의 책, p.5.



체계에서는 상호관계성, 순환성, 개방성, 다양성, 균형성 등과 관련한 문제가 지적되며 현재의 체계만으로 무형문화유산의 자생적 발전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다음 제3장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생태계의 원리를 활용하여 무형문화유산 체계의 개선 및 자생력 강화 방안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 Ⅲ. 생태계 적용을 통한 무형문화유산 체계의 개선방안

#### 1. 관련 규정의 기본원칙 정립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무형문화유산 체계의 기본 원칙과 운영 방향은 현재 국제표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생태계적 방식에 입각해 정리한 것이다. 먼저 무형문화유산 관련 규정의 기본 원칙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원형보존주의’를 폐지하고,<sup>20</sup> ‘국가주도방식’은 재검토하여 균형적인 관점에서 활동주체의 역할과 관계를 재설정한다. 이를테면 국민을 정부시책에 협조하는 수동적 계층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향유하는 계층으로의 인식을 확대한다. 그리고 보유자는 전통 계승자의 역

할뿐만 아니라 예술가로서 인식하고 그들의 창작 및 표현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중점보존주의’는 현재 중요도에 의해 중요무형문화재를 선정하여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승 단절 위기에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sup>21</sup>

기존의 기본원칙 외에 새롭게 ‘상호관계성 존중’을 주요 원칙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생태계적 방식에 입각한 무형문화유산의 자생적 발전을 피하는데 필요한 기본 사항이기도 하지만 2004년에 채택된 야마토선언(Yamato Declaration on Integrated Approaches for Safeguarding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에도 명시된 사항이다. 세계 전문가들은 이 선언을 통해 문화유산은 형식상 유형과 무형 그리고 자연 등으로 분리할 수 있지만 본래 서로 밀접한 관계 속에 생산·발전해 왔음을 명시하고 이를 문화유산제도 운영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sup>22</sup> 이에 따라 현재의 무형문화유산의 부분적인 특징을 강조하여 분리하는 방식을 재고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문화유산의 상호관계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기본원칙에 입각해 무형문화유산 관련 활동주체와 제도적 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 방향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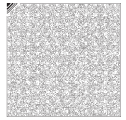
표 7. 무형문화유산 관련 규정의 기본원칙 개선방향

기본 원칙	개선방향 내용
원형보존주의	→ 폐지
중점보존주의	→ 전승 단절위험에 있는 문화유산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방식
국가주도방식	→ 국가, 국민, 보유자 및 전승자들과 관련 주체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 - ‘국민’을 적극적인 활용·향유계층으로 개념 확대 - ‘보유자 및 전승자’를 예술가로 인식, 이들의 창작 및 표현활동을 돕는 정책 보완 - ‘정부’는 관련 주체들의 활동 및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제도적 뒷받침 역할
상호관계성 존중	→ 문화유산의 여러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관련 제도를 운영

20 2016년에 시행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원형유지 원칙은 폐지하기로 하였다. 문화재보호법으로부터 독립하여 새롭게 제정되는 이 법률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을 개선하여 ‘무형문화유산 범주 확대’, ‘원형유지 원칙의 폐지’, ‘대학을 통한 전수교육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자생력, 수요와 공급의 조화, 선순환 구조, 일반시민 역할의 중요성 측면에서의 내용은 미흡해 보인다.

21 판소리 등 자생력을 어느 정도 갖춘 종목과 바디장, 사직대제 등 소멸위험에 처한 종목 모두에 대해 일괄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문화유산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 각각의 다른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22 portal.unesco.org/culture/en/ev.php-URL\_ID=31373&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



## 2. 생태계적 시스템 구축과 운영

본 논문에서는 생태계의 특징과 원리를 접목한 제도적 장치 및 시스템으로써 무형문화유산 체계를 ‘무형문화유산 생태계’라 명명하고자 한다. 기존의 무형문화유산 체계가 무형의 문화유산과 정부기관 및 전문가, 보유자 및 전승자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것과 비교하여 ‘무형문화유산 생태계’에서는 구성요소를 크게 ‘문화유산’, ‘활동주체’, ‘사회적 환경 및 플랫폼’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범위와 역할을 아래와 같이 확대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첫째, 무형문화유산 생태계에서 ‘문화유산’에는 전체론적 관점에서 무형의 유산과 이와 관련한 도구, 물품,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뿐만 아니라 새롭게 창작, 축적되는 콘텐츠까지 포함한다. 또한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국가영역에서만 보존하는 대상이 아닌 사회의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따라 변화·발전하는 대상으로 확대한다.

둘째, ‘사회적 환경 및 플랫폼’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보다 확장한다. 기존의 전통 보전활동이 일어나는 공간뿐만 아니라 시민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향유활동이 일어나는 공간과 ‘산업적 활용이 일어나는 공간’까지 포함한다.

셋째, ‘활동주체’의 역할과 관계는 기존의 원형 보전에 치중했던 점을 개선하고 생산·소비·재생산·소멸 등의 선순환적 발전흐름이 일어나도록 자연생태계의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개념에 따라 그 역할과 관계를 재편성한다.

무형문화유산 생태계에서 ‘생산자’ 계층은 무형문화유산을 창작·표현하는 사람을 말하며 기존의 보유자 외에 현대적·대중적 요소를 가미하여 콘텐츠를 창작하는 사람까지 포함한다. ‘소비자’ 계층은 무형문화유산을 소비·향유하는 일반 대중을 말하며 여기에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여 유통하는 소비자, 즉 프로슈머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분해자’ 그룹은 생태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

표 8. ‘무형문화유산 생태계’ 구성방향

구성 요소	무형문화유산 생태계 내용	기존 체계 내용
문화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형’의 유산과 이와 관련한 ‘유형’유산, ‘공간’</li> <li>• 새롭게 창작·축적되는 무형문화유산 ‘콘텐츠’</li> </ul>	‘무형’의 유산
사회적 환경 및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요무형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 보호·전승·향유 공간</li> <li>• 일상적 향유 공간</li> <li>• 산업적 활용 공간(온·오프라인)</li> </ul>	중요무형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 보호·전승·향유 공간
활동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활동주체 : 정부기관 및 전문가, 보유자 및 전승자</li> <li>• 새롭게 육성 : 창작자, 단순 소비자, 프로슈머, 기업, 교육기관, 창업자</li> </ul>	정부기관 및 전문가, 보유자 및 전승자

표 9. ‘무형문화유산 생태계’ 활동주체 역할 및 관계

활동주체	역할	비고	
생산자	전승자	중요무형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창작 및 표현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주체 관계 : 균형, 상호교류, 협력, 경쟁을 통한 진화발전 촉진</li> <li>• 새로운 활동주체 : 창작자, 창업자, 프로슈머 양성 공급 다양화 기여</li> </ul>
	창작자	현대적·대중적 요소 가미한 콘텐츠 창작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창작, 공급 다양화 기여	
소비자	단순소비자	콘텐츠 소비·향유·피드백	
	프로슈머	콘텐츠 제작·소비·유통 등(마케팅 프로슈머, 교육 프로슈머, 정책 프로슈머, 크라우드 펀딩 등) <sup>23</sup>	
분해자	정부기관	제도적 지원, 전승 단절 위험 문화유산 집중관리, 교류 활성화, 창업 촉진 등	
	교육기관	창작자 및 전문 인력 양성, 시민 양성 등	
	기업	후원 및 투자, 콘텐츠 개발 및 유통	
	창업자	무형문화유산 활용 창업활동, 시장개척 등	

23 무형문화유산 관련 프로슈머는 ‘마케팅 프로슈머’, ‘교육 프로슈머’, ‘정책 프로슈머’ 등 다양하게 양성한다. 여기서 ‘교육 프로슈머’는 피교육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운영하는 교육방법을 말하며, 피교육자가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토론과 발표 중심의 수업을 통해 피교육자와 교육자 사이에 소통과 수평적 교류가 원활히 되는 것을 추구하며 궁극적으로 집단지성의 창출을 목표로 한다. ‘정책 프로슈머’는 정책의 수혜를 받는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표 10. 무형문화유산 분야 창업자·프로슈머·시민예술가 양성을 위한 추진과제 예시

구분	추진과제		주요내용
창업자	기반 조성	연구 개발	전통기법 및 전통적 소재 활용 제품, 콘텐츠 연구개발 대학 및 연구기관 지원, 선진국과 R&D프로그램 운영 등
		펀드 조성	정부자금 출자, 민간투자 유치, 크라우드 펀딩 등
	인력 양성	엑셀레이터 및 인큐베이팅	일반인 모집 및 선발 → 시설 및 창업비 지원, 멘토링 및 교육 지원, 투자자 연계 지원 등
	활성화	판로 지원 및 후속 투자	국내외 판매처 연결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직·간접적 후속투자 연계, 업무에 필요한 재교육 지원 등
프로슈머	정책 프로슈머		공무원·일반시민·전문가 팀 구성, 무형문화유산 정책 아이디어 제안 및 실제 사업 추진 등
	교육 프로슈머		일반시민 대상 기·예능 전수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피교육자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참여, 소통 및 수평적 수업방식 추구)
	마케팅 프로슈머		무형문화유산콘텐츠 시장조사, 상품화 계획, 홍보, 판매 촉진 등 관련 활동에 수요자 참여
	모바일 프로슈머		무형문화유산 소재 모바일 UCC 콘텐츠 생산·유통 활성화 등
시민 예술가	기반 조성	추진 기관 모집	교육 단체 및 관련 기관 모집·지원 시민 주도형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 등 개발 등
	인력 양성	일반 시민 발굴 및 교육	재능 있는 일반시민 발굴, 역량 교육 실시
	활성화	전문 활동 지원 등	시민 주도형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에 활동기회 제공 역량 재교육, 전문 예술 활동 지원 등

하고 각종 활동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데 기존의 정부 기관을 비롯하여 기업과 대학 및 연구기관, 창업자 등이 이 역할을 맡는다. 기존 체계와 비교하여 새롭게 육성되는 ‘창작자’, ‘프로슈머’, ‘창업자’는 공급의 다양화 측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의 활동은 장기적으로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생태계에서 활동주체들의 관계는 균형적, 상호교류, 협력, 경쟁을 통한 진화발전 등이 되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먼저 불균형적으로 발전된 부분을 조정하고 상대적으로 발전도가 미흡한 소비자 계층을 활발히 양성하며 창작자,

창업자, 시민예술가,<sup>24</sup> 전문 인력 등을 양성하여 수요와 공급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표 10>은 추진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전승자들 사이의 관계는 상호교류와 협력 및 경쟁을 통한 진화 발전이 가능하도록 계과 출신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전승활동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전승자들에게 전승활동 외에 창작 및 창업 등과 같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소수 보유자가 되기 위한 갈등을 최소화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도식화 하면 <그림 1>과 같다.

24 시민예술가의 대표적 사례로 ‘안동 실경 뮤지컬’, ‘청도 철가방 극장’, ‘일본 홋카이도 100인의 이야기꾼’ 등을 꼽을 수 있다. 안동의 실경뮤지컬은 연출, 음악, 의상, 주연 및 조연급 배우와 진행요원 등 뮤지컬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민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안동영상미디어센터의 전문교육을 거쳐 실제 공연현장에 투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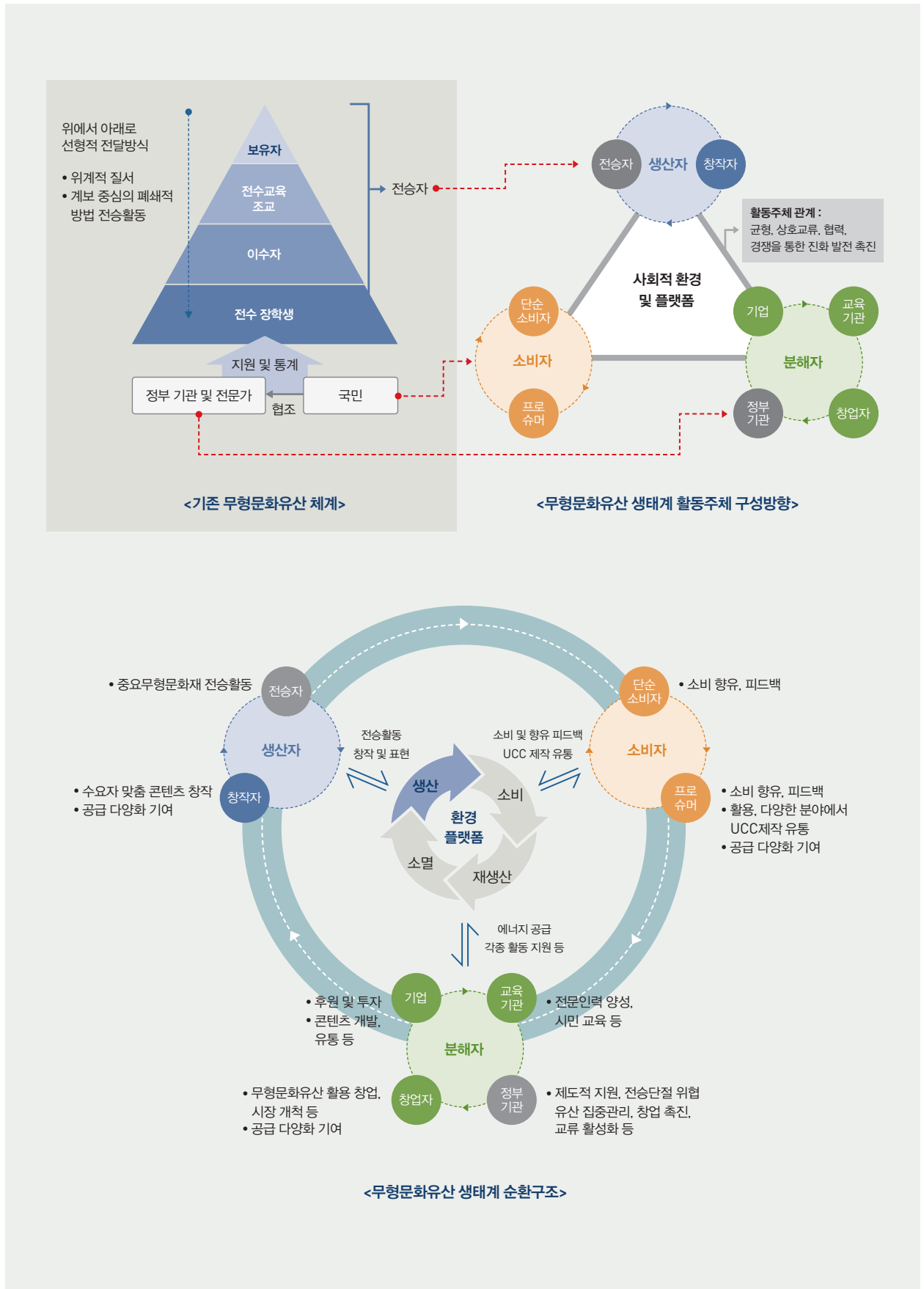


그림 1. 일상 속 무형문화유산의 계승 및 창조적 발전을 위한 생태계 구성방향

## IV. 결론

오늘날 국가의 제도로 보전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은 본래 일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전통사회의 수요와 공급, 사회문화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자생적으로 전승·발전되던 것이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와 근대 도시화 및 공업화를 거치면서 그 명맥과 자생력에 손상을 입게 되었고, 1962년 1월 10일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보호·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변화되었다. 그동안 무형문화유산은 국가주도 하에 문화재보호법을 기반으로 한 무형문화유산 체계로 보호·전승되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근대 시기에 소멸될 위험에 처했던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국가의 개입과 지원이 없으면 무형문화유산을 제대로 전승할 수 없는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승 단절 위기 현상이 방증하듯이 언제까지나 국가의 한정된 지원에만 의존하여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할 수 없다. 과거 전통사회 때처럼 무형문화유산의 자생력을 키워 내부의 힘만으로 보호·전승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사회 여러 분야에서 자생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등을 피하기 위해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생태계적 패러다임을 통해 기존의 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무형문화유산의 자생력 강화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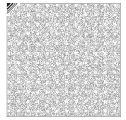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생태계적 방식에 입각해 자생적 발전방안을 연구한 논문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생태계적 세계관과 생태계의 공생을 위한 유기체적 원리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는 첫째, 무형문화유산 체계에서 무형문화유산이 사람 및 사회 환경과 분리되어 기·예능을 객관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다고 전제되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둘째, 무형문화유산의 비경제적 특성으로 인해 가치사슬 및 선순환 구조의 형성만으로 자생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모색하기 위해서이다.

생태계적 관점에서 무형문화유산 체계를 검토한 결과 상호관계성, 순환성, 개방성, 다양성, 균형성 등과 관련한 문

제점이 지적되며, 무형문화유산이 사람과 기능 및 예능뿐만 아니라 여러 기준에 의해 나뉘져 있고 정부의 개입을 전제하지 않으면 체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고착화되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생태계의 특징과 원리를 활용해 무형문화유산 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기초로 하여 상호관계성, 다양성, 균형성 등 생태계적 방식에 입각해 관련 규정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고, 전체론적 관점에서 제도적 시스템의 구성 요소 및 활동주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제안하였다. 그리고 기존 활동주체의 역할과 관계가 기능 및 예능의 원형 보전에 치중했던 점을 개선하여 무형문화유산의 생산·소비·재생산·소멸 등 선순환적 발전의 흐름이 일어나도록 자연생태계의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개념에 따라 그 역할과 관계를 재편성하여 제안하였다. 기존의 체계와 비교하여 활동주체로 창작자, 프로슈머, 창업자, 시민 예술가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들의 활동은 공급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활동주체들 간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의 수요와 공급의 조화, 순환적 발전의 흐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의 구성 및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무형문화유산의 자생력 측면에서 기존의 정책 및 제도가 원형 보전과 공급 측면에 편중되어 있음을 밝히고, 자생력의 강화를 위해 시민 양성을 통한 수요 창출, 수요와 공급의 조화, 선순환 발전 흐름의 중요성과 제도의 대상 및 활동주체의 범위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여 생태계적 방식을 통해 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또한 2016년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 새로운 관점에서 기존의 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자생력 측면에서 정책과 제도의 마련을 위한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하며 후속 연구를 통해 발전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고정민 · 김정호, 2000, 『벤처생태계의 형성과 진화』, 삼성경제연구소
- 권보람 · 김주성, 2014,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혁신플랫폼의 활용전략」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9권 제4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권혁인 외, 2015, 「공연예술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뮤지컬 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경영학회지』 제16권 제1호, 한국서비스경영학회.
- 권혁인 · 이진화, 2014, 「문화예술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 가치 네트워크 모델 구성과 특성 비교」 『문화정책논총』 제28권 제1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김광희, 2014,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보전과 활용」,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류준호 · 윤승금, 2010, 「생태계 관점에서의 문화콘텐츠 산업 구성 및 구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4호, 한국콘텐츠학회
- 리차드 쿨린, 2007,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2003년 협정 이행을 위한 핵심 요소」 『국제저널 무형유산』 제2호, 국립민속박물관
- 문순홍, 2006, 『생태학의 담론』, 아르케
- 문화재청, 2012, 「중요무형문화재 활성화 종합계획」
- 문화재청, 2011, 「무형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
- 문화재청 · 아태무형유산센터, 2010,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해설집」, 문화재관리국 · 아태무형유산센터
- 박이문, 1997, 『문명의 미래와 생태학적 세계관』, 당대
- 배영동, 1996,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시 선정기준과 조사방법 개선방안」 『중요무형문화재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문화재관리국
- 『부산일보』, 2014년 4월 10일, 「경남도 32개 무형문화재 대 이을 젊은 사람이 없다」
- 브로펜브레너 지음, 이영 옮김, 1992, 『인간발달 생태학』, 교육과학사
- 삼성경제연구소, 2012, 『기업생태계와 플랫폼 전략』
- 『세계일보』, 2012년 9월 25일, 「중요무형문화재 27.6%, 보유자 · 전수교조 부재 단절위기」
- 송준, 2008, 「無形文化遺産의 保存과 活用に 대한 小考: 전형典型의 개념을 중심으로」 『남도민속연구』 제17호, 남도민속학회
- 신창호 · 김목한, 2013, 「서울시 기술창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방안」 『서울시 정책리포트』 제136호, 서울연구원
- 안나 브람웰 지음, 김지영 옮김, 2013, 『생태학의 역사: 에콜로지의 기원과 전개』, 살림
- 오정심, 2015, 「생태학적 관점에 입각한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적 전승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철호 · 김기형, 2010, 「정책연구에서 생태학적 관점의 적용가능성」 『韓國政策學會報』 제19집 제4호, 한국정책학회
- 유명만, 2006, 『지식생태학』, 삼성경제연구소
- 유재미 · 오철호, 2011, 「지식생태계 연구 경향, 한계 그리고 제언」 『정보화 정책』 제18권 제4호, 한국정보화진흥원
- 이문호, 2007, 「한국의 근대화와 한국 전통춤의 자생력상실 배경: 사회학적 접근」 『공연문화연구』 제15호, 한국공연문화학회
- 이장렬, 2005, 「한국 무형문화재정책 연구: 중요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호, 2009, 「무형문화재 공연상품 소비자의 욕구 및 동기와 만족 간의 관계 분석」, 추계예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돈희, 2008,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정책과 그 의미」 『너울』 제208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임재해, 2009,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방향의 재인식」 『비교민속학』 제39호, 비교민속학회

## 참고문헌

- 정수진, 2004, 『한국 무형문화재 제도의 성립 : 그 사회적 조건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줄리안 스투어드 지음, 조승연 옮김, 2007, 『문화변동론 문화생태학과 다선진화 방법론』, 민속원
- 『충청일보』, 2014년 7월 16일, 「위기의 충청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의 딜레마」
- 최종호, 2007, 「무형문화유산 활용론 : 무형유산 콘텐츠 측면에서」 『전통문화논총』 제5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최종호, 2005,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연구」 『문화재학』 통권 제2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프리츠포 카프라 지음, 김용정 · 김동광 옮김, 1998, 『생명의 그물 : 생물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이해』, 범양출판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전통공연예술산업육성기본계획수립』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예술의 자생력 강화 방안』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전통문화산업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Dawson Munjeri, 2004,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 from difference to convergence", *Museum International*, Vol.56
- Eugene P. Odum, 1992, "Great ideas in ecology for the 1990s", *Bioscience*, Vol.42
- Lourdes Arizpe, 2004,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iversity and Coherence", *Museum International*, Vol.56
- Lucas Lixinski, 2013,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International Law*,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Marilena Alivizatou, 2012, *Intangible Heritage and the Museum : New Perspectives on Cultural Preservation*, Calif : Left Coast Press
- Noriko Aikawa, 2004, "An Historical Overview of the Preparation of the UNESCO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useum International*, Vol.56



# A Study on Improving Operating System of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y an Ecological Perspective

Oh Jung-Shim

Global Cultural Contents Research Cent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at transmissions of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Korea may be cut off because it is separated from human and social environment and protected and managed under the national system. In addition, another purpose is to criticize concept and method dichotomy in the current institution from an ecological perspective and consider the problem that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are transmitted mainly by holders having skills and accomplishments by distinguishing them from others. Furthermore, the last purpose is to suggest a direction of policy emphasizing an importance of establishment of environment which allows nurture, change and development of local people, which may ensure continuous transmission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and a transmission system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y using a principle in which the system is operated by self-recovery and natural rule of the ecology.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seven problems can be analyzed by reviewing concept establishment and protection and transmission measur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according to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based on the ecological perspective. The protection and transmission methods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rough the cultural heritage ecology are suggested by applying ecological theory to it.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cology defined in this paper means 'a sustainable community consist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ubject of activity and physical environment.' Since it is operat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reflecting the rules and features of natural ecology, it can keep system through self-recovery without an external intervention, as the case of natural ecology.

---

**Keywo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cological perspectiv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cology, self-recovery,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Received 2015. 03. 31 • Revised 2015. 04. 17 • Accepted 2015. 07. 27